

「2023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전라북도 미래 산업을 주도할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3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모집 개요

- 사업명 : 2023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3년 2월 24일(금) ~ 3월 17일(금) 18시까지
- 모집구분 및 모집대상

| 구분 | 모집 대상 |
|-------|--|
| ①신규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하 기창업자*** 1983년 2월 25일 이후 출생(2.14. 출생자 포함)** 2022년 2월 25일 이후 등록기업(개인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설립연월일) |
| ②연속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사업 중단 및 포기자는 해당되지 않음. |

※ 예비창업자 및 전라북도 외 소재한 기창업자는 협약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라북도 내 지역에 사업자 등록 및 이전해야 함.

2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3년 4월(협약일) ~ 12월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신규지원 16개사 내외, 연속지원 3개사)
-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 신규지원 : 참여자당 최대 30백만원 지원(기업별 차등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30백만원 / 10백만원)
- 연속지원 : 참여자당 5백만원 지원

| 지원 항목 | 내 용 |
|---------|--------------------------------------|
| 외주용역비 | · 자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의뢰비(시제품제작비) |
| 광고선전비 | ·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
| 재료비 | · 재료·원료 구입비 |
| 지재권취득비 | ·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
| 기자재 임차비 | · 기술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월 임차비용 |
| 사무실 임차비 | ·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공간 월 임차비용(창업 보육시설 제외) |

※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지원하지 아니함.

② 전문가 컨설팅 지원 (필수이수)

- 맞춤형분야 전문가 멘토 1:1 매칭을 통한 창업 활동 전반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기업 간 협업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다대일 그룹 멘토링 운영

③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지원 (필수이수)

-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이론·실무 교육을 통한 참여기업 창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사업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운영

④ 창업공간 제공

- 집중보육실(1인 사무공간) 또는 오픈스페이스 지원
- 세미나실, 회의실, 교육실 등 편의시설 제공
- 협약 기간 동안 입주비 및 관리비 무상 지원



○ 지원절차

| | | |
|-------------|-------------------------------|--------------|
| 선정 및 협약 체결 | • 선정평가 후 최종선정자 협약체결 | 4월 |
| 기술사업화 자금 |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4월 ~ 11월 |
| 전문가 컨설팅 | • 경영회계세무법률 등 1:1 멘토링 최대 3회 지원 | 6월/8월/10월 |
|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 • 창업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교육 프로그램 | 4월/7월/9월/12월 |
| 창업 공간 제공 | • 창업 공간 입주 희망자 입주 계약체결 | 협약일 ~ 12월 |
| 최종 점검 | • 사업수행결과 및 지원성과 평가 | 12월 |

※ 기재된 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4일(금) ~ 3월 17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 온라인 접수
 -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으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 1개의 스캔본(pdf) 혹은 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 문의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팀(063-220-8933/8939)
- 신청자격 (공고일 : 2월 24일 기준)
 - ① (신규지원) 도내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하 기창업자
(연속지원) 2022년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 ② 전라북도 외 지역에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경우 협약이 후 6개월 이내에 전라북도 내 지역에 사업자 등록 및 이전이 가능한 자
 - ③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참고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④ 위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만 39세 이하 | • 1983년 2월 25일 이후 출생(1983. 2. 25. 출생자 포함) |
| 기업 업력 | • 2022년 2월 25일 이후 등록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 2022년 사업 참여자 | • 사업 중단 및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협약 완료자 |

○ 신청제외대상

①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완납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③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⑤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⑥ 위 ①~⑤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
| 신청서류 | ① [서식1] 사업신청서 ② [서식2] 사업계획서 ③ [서식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증빙서류 |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⑤ 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가능)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표등본 - 기창업자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폐업증명원(폐업사실이 있을 경우)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각종 인증서, 국내외 특허 및 규격, 수상 실적 등 |

4

선정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요건 검토 |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 선정·협약 |
|-----------------|----------------------|------------------|---|----------------------------|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증빙자료 보완 |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선정 및 협약 |
| 2.24.~3.17. | 3.17.~3.22. | 3.23. | 3.30. | 4.3.~ |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선정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한 20명(개사) 내외 선정

○ 선정평가

- 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기반 서면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창업아이템 적정성,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창업자 역량 등 대면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신청자(대표자)가 반드시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③ 최종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총 23명(개사) 지원 예정, 사업시행 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선정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 내용 | 배 점 (단위 : 점) | |
|----------|--------------------------|--------------|-----|
| 1. 적 합 성 | 1-1. 창업아이템의 미래산업분야 영위 여부 | 20 | 100 |
| | 1-2.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10 | |
| 2. 실현가능성 | 2-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10 | |
| | 2-2.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10 | |
| 3. 성장전략 |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10 | |
| |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10 | |
| 4. 팀 구성 | 4-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30 | |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창업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발표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며, 사업시행 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대표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지침 및 공고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와 수행기관이 정할 수 있음

○ 신청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사항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참고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2. 창업인정 기준 진단표(폐업 해당시)
3. 사실증명원 발급방법(홈택스)
4.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홈택스)
5.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민원24)

참고1**지원제외 대상 업종**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
|----|--|--------|
| 1 |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 2 | ○ 부동산업 | L68 |
| 3 |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 4 | ○ 일반유희주점업 | 56211 |
| 5 | ○ 무도유희주점업 | 56212 |
| 6 |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 7 |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 |
| 8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9 |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10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참고2

창업인정 기준 진단표(폐업 해당시)

| 창업이력 |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 상세 구분 | | 창업여부 | 자가진단 (○표시) | |
|------------------------|-------------------|-----------------|---------------------|-------------|-------------------|----|
| 상속 / 증여 | 개인 |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 동종유지 | 불인정 | | |
| | | | 이종변경 | 창업 | | |
| | 법인 |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 동종유지 | 불인정 | | |
| | | |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이종변경 | 창업 창업 | | |
| 창업이력 없음 | 개인/법인 | 사업자 신설 | | 창업 | | |
| 창업이력 있음 | 개인기업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불인정 | | |
| | | | 이종창업 | 창업 | | |
| | | | 동종창업 | 불인정 | | |
| | | | 폐업 3년 초과 | 창업 | | |
| | | | 부도/파산 2년 초과 | 창업 | | |
|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 창업 | | |
| | 법인기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동종창업 |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 창업 | |
| | | | | 동일인인 경우 | 불인정 | |
| | | | |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창업 | |
| | | | | 법인전환 |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창업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동종창업 | 이종창업 | 창업 | |
| | | | | 폐업 3년 초과 | 창업 | |
| | | | | 부도/파산 2년 초과 | 창업 | |
| | | | | 자회사 해당 | 불인정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 동종창업 |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 창업 | | | |
| | |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 창업 | | | |
|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 동종유지 | 동종유지 | 불인정 | | | |
| | | 이종변경 | 창업 | | | |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 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참고3

사실증명원 발급방법(홈택스)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② 신고/납부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③ 사실증명 발급신청

-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한 번도 창업한 이력이 없는 자
- 기창업자 또는 폐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 1회 이상 창업이력이 있는 자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신청시간은 24시간 입니다.
-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기준, 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요일(공휴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여 발급하는 증명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 민원사무명 | 발급신청 | 이용목적 | 납세자번호 입력구분 | 인증서 필요여부 |
|----------------------------------|------|--|-------------------------------------|----------|
| 사실증명(체납내역) | 신청하기 |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체납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용 :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 본점(지점)사업자등록번호 | |
|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신청하기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필요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 ③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받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 신청하기 |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신청하기 |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 신청하기 |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개인용 :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 본점(지점)사업자등록번호 | |
|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적권발소) | 신청하기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받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전용계좌개설여부) | 신청하기 |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신청하기 | 민원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
| 사실증명(개발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 신청하기 | 수출물품에 대한 개발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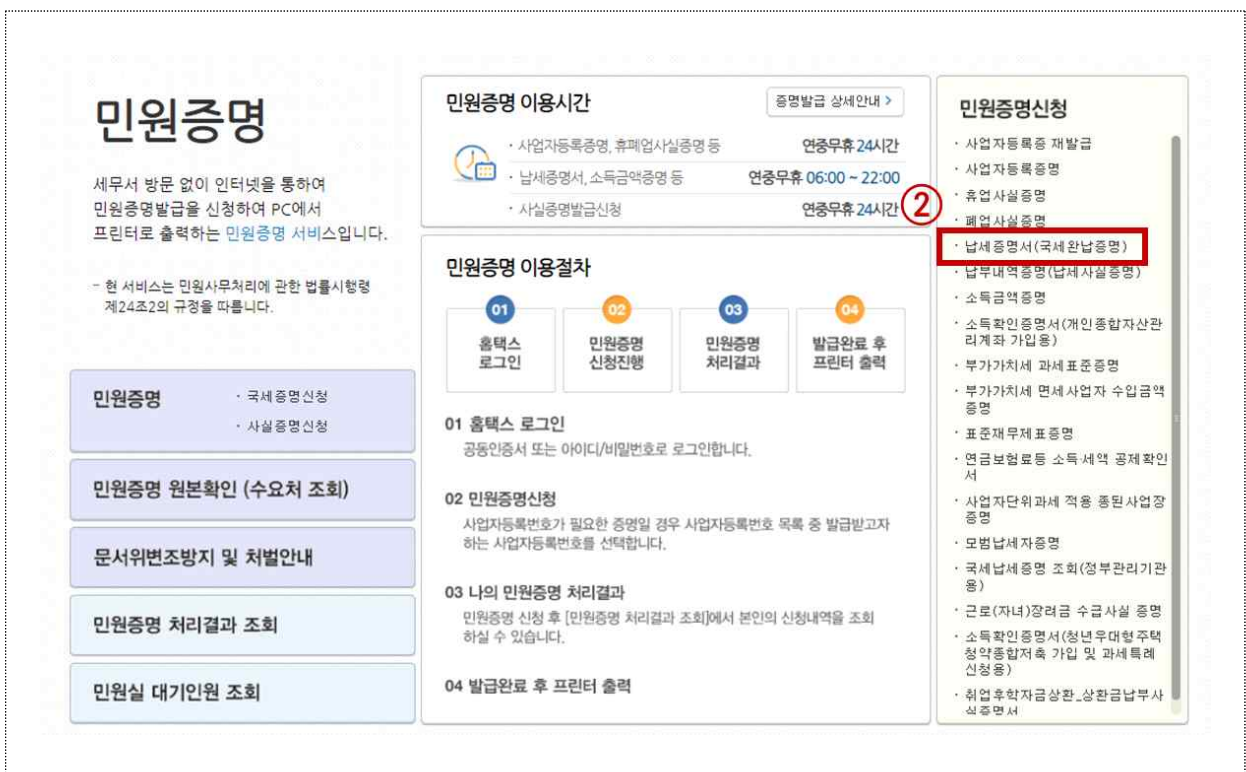
참고4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홈택스)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③ 필수입력정보 작성 → 신청하기

기본 인적 사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_____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010 - [] - []

이메일: []@naver.com []naver.com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마스킹(●●●●)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주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비공개시 출력 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비공개시 출력 예 : 881111-*****)

수령방법: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발급희망수량: 1 매

신청내용

발급유형: 한글증명 영문증명

사용목적: 대금수령 기타 해외이주

제출처: -선택-

신청일: 2023-02-06

3 → 신청하기

④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 증명서 확인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접수일자는 1주일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 |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접수일자: 2023-02-04 ~ 2023-02-06 민원사무명: [] 조회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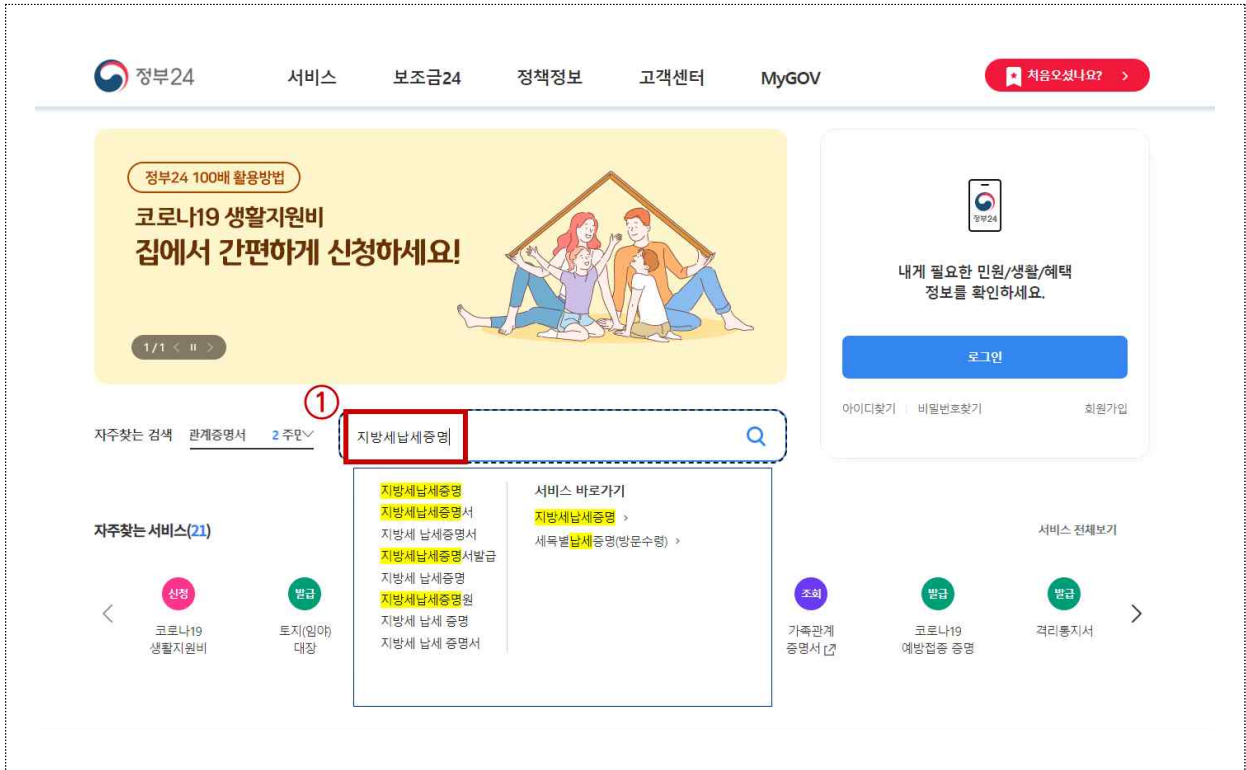
총 1건의 민원신청내역이 있습니다.

| 번호 | 민원접수번호 | 민원사무명 | 접수방법 | 처리상태 | 접수일시 | 발급수량 | 발급번호 | 증명신청 IP주소 | 비고 |
|----|-------------------------|--------------|------|------|---------------------|------|--|-----------|----|
| 1 | 418-2023-2-503236412274 | 납세증명서(대금수령용) | 인터넷 | 처리완료 | 2023-02-06 17:04:46 | 0/1 | 3689-122 | 확인 | 발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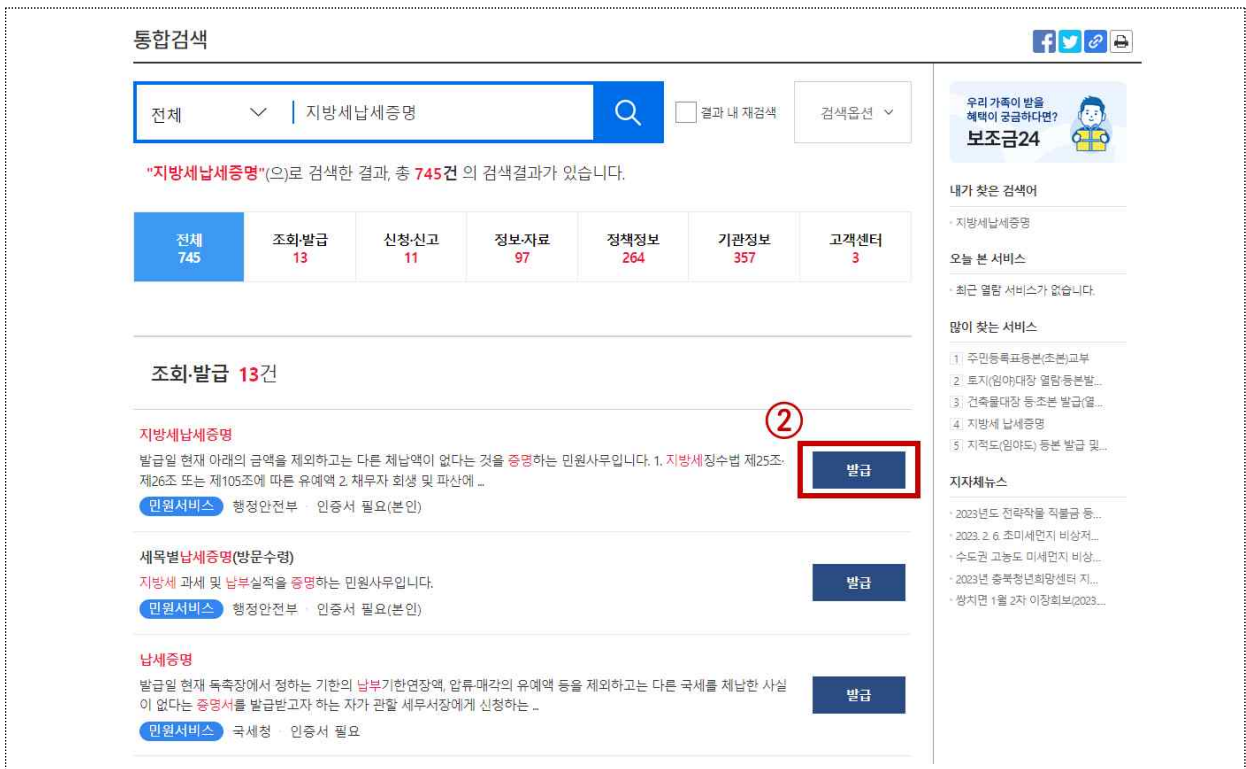
1 총1건(1/1)

참고5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민원24)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www.gov.kr)



② 지방세납세증명 검색 → 발급



③ 정보 작성 → 민원신청하기

신청내용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증명서사용목적

수령방법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발급부수 건

신청일 2023 년 02 월 06 일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전체선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합니다.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